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매월 1일 임시회 집회, 불출석 위원 개선 및
상당한 노력에도 협의 실패 시 위원장의 개회 권한 부여〉
■ 황정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239호)

2024. 8.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 상 수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매월 1일 임시회 집회	3
2. 회의 불출석에 따른 상임위원 개선	5
3. 위원회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 협의 실패 시 위원장의 결정권한 명시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황정아 · 박홍배 · 이훈기 · 진성준 · 정진욱 · 김남근
김 윤 · 백승아 · 이재관 · 양부남 · 박희승 · 문금주
복기왕 의원(13인)

2. 제 안 일 : 2024. 6. 10.

3. 회 부 일 : 2024. 6. 11.

※ 의안번호 : 23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집권 여당은 오히려 22대 국회 첫 본회의마저 보이콧하며 아무런 제재 없이 법에 명시된 회의에 불참하는 상황임.

또한 공전이 거듭될 경우 임기가 새로 시작된 22대 국회에서도 시급한 입법이 지연되어 민생경제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로 인해 상시 국회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을 제고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에 불출석한 위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사 간 회의 개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에게 회의 개최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8조의3 및 제49조 등).

Ⅲ. 검토의견

1. 매월 1일 임시회 집회(안 제5조의2)

개정안은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 시 매월 1일(정기회 기간은 제외하며, 12월에는 정기회 종료 후 3일 이내)에 임시회를 집회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① (생략)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② ----- ----- -----.
1. 2월·3월·4월·5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지 아니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1.매월 1일(정기회 기간은 제외하며, 12월은 정기회 종료 후 3일 이내) -----. ----- -----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이란 의장이 1년간의 국회운영에 관하여 작성하는 기본적인 일정을 말하는 것으로,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의원의 계획성 있는 의정활동 및 행정부 등 관련기관의 국회활동에 대한 충분한 사전준비를 위하여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1994. 6. 28.)시 도입된 것임.

현행 국회법은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 시 2·3·4·5·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표-2] 현행법에 따른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기준

구 분	작성기준
임 시 회	2·3·4·5·6월 1일 및 8월 16일에 집회하고, 회기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 (30일 이내) ※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집회
정 기 회	9월 1일에 집회하고(국회법 제4조), 회기는 100일
대정부질문	2·4·6월 임시회 중 1주간 실시

개정안은 현행법의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 기준에서 제외되어 있는 1·7월 및 12월(정기회 종료 후 3일 이내)에도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하고, 8월의 경우도 1일에 집회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려는 것으로 연중 상시 국회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보임.

2. 회의 불출석에 따른 상임위원 개선(안 제48조의3 신설)

개정안은 상임위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의 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일수가 회기별 전체회의 일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된 때에는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을 개선(改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표-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48조의3(위원 불출석에 따른 개선) 의장은 상임위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의 회의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일수가 회기별 전체회의 일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된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을 개선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률을 제고하고 성실한 의정활동 수행을 유도하려는 취지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회의에 일정 기준 이상 무단 불출석한 위원을 의장이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국회법은 위원의 선임·개선 시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경우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을 거쳐 의장이 선임·개선¹⁾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고,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상임위원이 무단 불출석한 회의 일수가 일정 기준이 이상이 된 때에는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해당 상임위원을 개선하거나 개선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적 단계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²⁾,

둘째, 상임위원회마다 회기별 회의 일수에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불출석 회의 일수가 동일한 경우라도 소속 상임위원회의 회기별 전체 회의 일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개선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위원 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셋째, 모든 의원은 하나 이상의 상임위원이 되어야 하므로 개정안에 따라 개선 대상이 되는 상임위원은 반드시 다른 상임위원회로 보임되어야 하고, 이는 불출석 관련 상임위원 개선 소요가 없는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의 사보임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

2) 이해충돌 위원의 선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회법 제49조의2의 규정양식을 참고

「국회법」 제48조의2(이해충돌 위원의 선임 제한) ③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제2항, 제32조의3제2항제4호 및 제32조의4제2항에 따라 위원이 소속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받은 경우 해당 위원이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해당 위원을 개선하거나 개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위원회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 협의 실패 시 위원장의 결정권한 명시 (안 제49조제2항 단서 신설)

개정안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를 정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간사와 협의를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표-4]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9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단서 신설>	제49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다만, 국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협의를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위원장과 간사 간의 협의가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원장이 협의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에는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개회를 원활하게 하고 일하는 국회의 구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위원장이 “국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당한 노력”의 판단기준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만 그 개념이 모호하여 그 기준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협의”란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의논하는 것을 의미할 뿐³⁾ 의사의 일치에 도달하는 것을 뜻하는 “합의”와는 그 의미를 달리하므로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014

3)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4) 참고로, 국회법은 주요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하는 사항과 “합의”를 요하는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주요 합의사항: ①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예: 심사기간 지정요건, 안건의 신속처리 미적용, 예산안 등 자동부의 미적용, 교섭단체 대표연설 추가 실시 등), ②위원장이 간사와 합의(예:의안 등 자동상정 미적용, 안전조정위원회 활동 기간 90일 이내 별도 지정 등)

• 주요 협의사항: ①의장이 각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예: 의석배정, 국회운영기본일정 작성, 회의 비공개, 의사일정 변경) ②의장이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예: 정보위원회 위원 선임 또는 개선)③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예: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소관 상임위원회 배정,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작성), ④위원장이 간사와 협의(예: 위원회 의사일정, 개회일시) 등